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5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540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단3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 선고 2020. 2. 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단3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191,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191,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설령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분양권을 양수한 C이 I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I이 C에게 285,671,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부산고등법원 2005나10951호)되었고, ② C은 위 중기 4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호증, 26호증, 30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I로부터 분양권의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중기들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C의 주식 35%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김종수

판사주은영